



교육감 규정

번호: D-210

주제: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

항목: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발행: 2025년 12월 18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2일자 교육감 규정 D-210을 대체합니다.

본 규정은 규정 및 불만 제기 절차에 관련한 품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규정의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소개

- 다양한 학부모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명시.
- 위원회 위원 책임 요약을 포함.
- 교육감 규정 D-210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은 관련법, 세칙이나 규정, 기준, 훈령 및 동의안 등에 관한 언급을 삭제.

II. 정의

- 뉴욕시 위원회 및 커뮤니티 학군 교육 위원회(CEC)를 섹션 II.A. 및 II.B.에서 정의하고 CCEC의 정의를 뉴욕시 위원회 및 CEC 모두를 칭하도록 섹션 II.C에서 개정.
- “품행(Conduct)”에 관한 정의를 교육감 규정 D-210 섹션 II.D.의 품행 범위에 맞게 명시하고 세분화.
- 섹션 II.F.에 “공개(Disclose)”의 정의를 포함.
- 섹션 II.G.에 “교육 기록(Education Record)”의 정의를 포함.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

- 섹션 II.I.에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 담당실 ("FACE") 설명을 간신.
- 섹션 II.J.에 설명된 평등위원회(Equity Council) 위원 선발 절차를 명시.
- 섹션 II.K.의 "학부모(Parent)"의 정의를 개정.
- 섹션 II.J. ("PII")에서 "개인 식별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의 정의를 가정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20 U.S.C. 1232G 및 관련 시행법, 34 C.F.R. Part 99, et seq. (FERPA)에 맞게 개정.
- 섹션 II.O.에 "언행(Speech)"의 정의를 포함.

III. CCEC 책임 (섹션 I 업무를 대체하는 신설 섹션)

- 기존의 "업무"에 관한 섹션을 교육법 섹션 2590-b, 2590-c 및 2590-e에 맞추어 특정 CCEC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대체.

IV. 금지 행위 (구 섹션 II)

- 섹션 IV.A.의 차별 또는 괴롭힘 관련 보호 항목을 확장하여 뉴욕주 인권법에 맞게 신장 및 체중을 포함하고, 불법 차별 및 괴롭힘 조항은 관련 지방법, 주법, 또는 연방법에 근거함을 명시.
- 섹션 IV.B.의 괴롭힘 및 위협 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 섹션 IV.C.의 교육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방해 행위나 언행 금지 조항을 포함.
- 섹션 IV.D.의 "PII" 공개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FERPA에 맞춰 간신된 정의를 사용.
- 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통해 접근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인적 이득이나 혜택을 위해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섹션 IV.E.의 내용을 명시.
- 섹션 IV.F.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집한 학생 연락처 정보 등의 PII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위원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이나 로비 활동, 또는 캠페인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
- 섹션 IV.G.에서 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본인, 가족 또는 본인이 사업이나 재무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개인이나 회사에 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
- 섹션 IV.H (구 섹션 V)에 보복 금지 조항을 포함.

V. 교정 및 처벌 조치 (구 섹션 III)

- 섹션 V.A 및 B에서 다른 교정 또는 처벌 조치는 오직 본 규정 섹션 IV 위반 시에만 적용됨을 명시.
- 본 규정 섹션 IV 위반으로 해직된 위원은 교육법 섹션 2590-c 및 2590-l에 근거하여 향후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도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을 섹션 V.C에 명시.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

VI. 불만 제기 절차 (구 섹션 IV)

- 섹션 VI.A.1., 2 및 3의 불만 제기 접수 절차를 명시.
- 부패, 범죄행위, 또는 이해 상충이 얹힌 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는 교육감 규정 D-130 및 C-110에 근거하여 적절한 담당실/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을 섹션 VI.A.6에 명시.
- 공평 이행 담당관(Equity Compliance Officer: ECO)은 불만 신고 접수 시 이에 관하여 FACE 평등 위원회에 공고해야 함을 섹션 VI.B.1에 명시.
- ECO의 불만신고 조사 기간 및 교육감 또는 교육감 대리인에게 권고사항을 발송하는 시기 요건을 섹션 VI.C. 및 D에서 개정.
-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시한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VI.D에 명시된 바와 같이 ECO의 신고 접수 후 10 업무일 이내에 본 규정 위반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판단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명시.
- 섹션 VI.E.의 화해 절차를 교육법 섹션 2590-I에 맞춰 개정.

VII. 이의제기 (신설 섹션)

- 위원회 위원 직무 중지 또는 해직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

IX. 면제 (신설 섹션)

- 교육감 또는 대리인이 뉴욕시 학교 학군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예외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

X. 문의 (구 섹션 VII)

- 문의를 위한 연락처 개정.

요약

본 규정은 뉴욕시 및 커뮤니티 학군 교육 위원회 선출 및 임명직 위원의 품행에 대한 뉴욕시 교육청의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을 규정하며 이 규정 위반에 대한 불만 제기 접수 및 해결 절차를 수립한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22일자, 교육감 규정 D-210,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및 불만 제기 절차: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에 선행한다.

I. 머리말

뉴욕시 교육청("교육청")은 학부모 리더십 및 참여가 뉴욕시 학교의 초석임을 인지합니다. 선출 및 임명 학부모 리더를 위해 차별, 괴롭힘, 편견, 인종차별, 위협이 없는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교육청은 모든 학부모 및 학생들을 존중하고 품위를 지켜 대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참여와 학부모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학부모 리더십의 다양한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환영하고 학부모를 사회 변화의 행위자로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

교육법에 부합하여 위원회 위원들은 여러 임무 중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교육 표준 및 목적의 성취 촉진의 책임을 가지며 이는 섹션 III “CCEC의 책임”에서 더욱 완전히 규정합니다.

선출 또는 임명 학부모 리더로서 위원회 위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 정직성 및 예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활동하는 위원회와 커뮤니티에서 모범을 보이고 담당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II. 정의

다음의 용어들은 본 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A. 뉴욕시 위원회는 교육법 섹션 2590-b에 정의된 4개의 교육 위원회를 말합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CCHS),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CSE),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CCELL) 및 뉴욕시 75 학군 위원회(CCD75).
- B. 커뮤니티 학군 교육 위원회(CEC)는 교육법 섹션 2590-c에 규정된 각 커뮤니티 학교 학군을 관할하는 32개의 위원회를 말합니다.
- C. CCEC는 뉴욕시 위원회 및 CEC 모두를 의미합니다.
- D. 품행은 CCEC 회의 또는 활동, CCEC 주최 행사, CCEC 선거 및/또는 캠페인 행사, 및/또는 위원회 위원이 공식 자격으로 참석하는 공개적인 출연 및 행사 중 및 석상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행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 1. 그러나 섹션 IV(B)(i), (iii) 및 (v)에 명시된 품행은 이런 품행이 위원회 위원의 책임 수행 능력을 합리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금지됩니다.
- E. 위원회 위원은 CCEC의 선출 또는 임명 위원을 말합니다.
- F. 공개란 교육 기록에 담긴 개인 식별 정보를 구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가정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법, 20 U.S.C. 1232g, 및 그 이행 규정, 34 C.F.R. Part 99, et seq. (FERPA)에 부합하여 기록을 제공하거나 생성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열람 허가 부여, 공개, 전달 또는 기타 통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G. 교육 기록은 FERPA에 규정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이는 학생과 직접 관련되고 교육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행하는 당사자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 H. 공평 이행 담당관(Equity Compliance Officer, “ECO”)은 본 규정의 위반 주장의 접수, 답변, 처리 및 조사를 책임지는 교육청 직원입니다.
- I. FACE는 교육청의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 담당실로 뉴욕시 학교 학군의 학부모 운영 구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 J. FACE 공평 위원회(공평 위원회)는 FACE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 위원회 및 교육감 학부모 자문 위원회의 학부모 리더 팀으로 ECO 채용 및 잔류에 대한 권고를 FACE에 제공하고 ECO에게 접수된 불만 제기의 해결에 대한 권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

- K. 부모는 부모, 보호자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의부모, 법으로 정한 보호자, 위탁 부모 및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Person in parental relation)"이란 사망이나 투옥, 정신병, 다른 주에 거주, 또는 자녀 유기 등의 이유로 아동의 보호자 부재 시, 이 아동의 양육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L. 개인 식별 정보의 정의는 FERPA에 규정되어 있으며, FERPA에 부합하여 다음 학생의 교육 기록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 학생 또는 학생 가정의 주소, 학생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학생 번호 또는 생체 기록 등의 개인 식별 정보, 학생의 나이, 생년월일, 출생지, 어머니의 결혼 전 성 등의 간접 식별 정보, 관련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없는 학교 커뮤니티 내의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으로 학생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연결되거나 연결될 수 있는 기타 단독 정보 또는 정보의 조합, 또는 위원회 위원이 교육 기록(PII)과 관련된 학생의 신원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요청한 정보.
- M. OSI는 교육청의 특수 조사 담당실입니다.
- N. SCI는 뉴욕시 학군 조사 특별 커미셔너로 뉴욕시 학군의 비행 혐의를 조사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 O. 언행은 다음 상황의 진행 중 또는 석상에서 위원회 위원의 구두 및 서면 언어 사용을 말합니다: CCEC 회의, 활동 또는 CCEC 소셜 미디어 계정의 전자 메시지 또는 포스팅을 포함한 CCEC 의 통신, CCEC 주최 행사, CCEC 선거 및/또는 캠페인 행사, 및/또는 위원회 위원이 공식 자격으로 참석하는 공개적인 출연 및 행사 중.
 1. 그러나 섹션 IV(B)(i), (iii) 및 (v)에 명시된 언행은 이런 언행이 위원회 위원의 책임 수행 능력을 합리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금지됩니다.

III. CCEC의 책임

- A. 교육법 섹션 2590-c 및 2590-e에 따라 CEC는 집행 또는 행정 권한이나 기능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 등을 갖습니다:
 1. 교육관련 표준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목표 달성을 촉진.
 2. 교육법 섹션 2590-e(7)에 설명된 연수 및 지속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3. 수퍼인텐던트가 제출한 존 설정선(zoning line) 승인.
 4. 수퍼인텐던트와 최소 매달 회의를 열어 학군의 현재 상황과 교육감이 요구하는 학군의 종합 교육 계획의 이행을 향한 진척을 논의.
 5.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검토 및 학생 성취에 대한 영향 평가.
 6. 수퍼인텐던트와 최소 매달 공개 회의를 열어 학부모 및 커뮤니티가 의견을 내고 우려를 표현할 수 있는 공공 포럼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대중 발언의 기회 제공.
 7. 학군 내에서 1개 이상 학교를 관할하는 모든 기타 학습 감독 담당자에 대한 연례 평가 제출.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

8. 학군의 연례 수용 능력 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9. 필요에 따라 교육감 및 시위원회에 학군의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10. 학교 리더십 팀과 연계하고 지원하며, 대표를 지정하여 학군 리더십 팀에서 활동.
 11.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 선발 절차 자문.
 12. 교육법 섹션 2590-e(21)에 규정된 학교 활용의 중대 변경 제안과 관련한 합동 공청회 개최.
- B. 교육법 섹션 2590-b에 따라 뉴욕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 등을 가집니다:
1. 다음 교육 또는 학습 정책에 자문하고 의견 제시:
 - a. CCHS: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
 - b. CCSE: 장애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 c. CCELL: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 학생 관련 서비스 제공
 - d. CCD75: 제75 학군 서비스 제공
 2. 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례 보고서 발표 및 적절한 경우 이런 교육의 효율성과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서비스 전달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천 및
 3. 최소 월 1회 이상 일반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각 뉴욕시 위원회가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현안에 관해 일반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C. 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법 섹션 2590-e(7)에 의거하여 FACE가 개최하는 모든 연수 및 지속 교육 기회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연수는 본 규정 준수에 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이 처음으로 취임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위원회 위원은 교육법 섹션 2590-e(7)에 따라 연례 지속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며 여기에는 본 규정 준수에 대한 보충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위원회 위원이 앞서 언급된 연수 및 지속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법 섹션 2590-i에 따라 직위 해제될 사유가 됩니다.

IV. 금지 품행

- A. 위원회 위원은 지역, 뉴욕주 또는 연방법으로 금지된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외국인, 시민권 상태, 나이, 혼인 상태, 파트너십 상태, 장애, 성적 지향, 성별, 키, 몸무게 및 군대 상태를 바탕으로 그 어떤 인물 또는 주체를 대상으로도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의 품행 또는 언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 B. 위원회 위원은 다음 품행 또는 언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i)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체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ii) 합리적인 사람이 폭력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품행 또는 언행(합리적인 사람으로부터 이런 반응을 예상할 수 있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

출신 국가 및 장애에 따른 비방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ii)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위협적인 폭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품행 또는 언행, (iv) 음란한 품행 또는 언행, 또는 (v)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 또는 발언.

- C. 위원회 위원은 CCEC의 업무 수행을 지장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방해 품행 또는 언행(소리 지르기, 욕설 또는 물리적 표출과 같은 품행이나 언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런 품행 또는 언행이 CCEC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 D. 위원회 위원은 교육감 규정 A-820 및 FERPA에 부합하여 승인된 공식 위원회 목적 이외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PII를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E.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직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메일 리스트, listserv,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적 혜택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후보 또는 후보군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 F.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취득한 학부모 또는 학생 연락 정보를 포함한 모든 PII를 사적 연락, 로비, 캠페인 또는 정치 활동을 위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는 규정 A-820 및 FERPA에 따라 승인된 공식 위원회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G. 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본인, 교육감 규정 C-110에 정의된 가까운 친척, 또는 본인이 사업이나 재무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개인이나 회사에 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H. 위원회 위원은 차별에 반대하거나 본 규정에 따라 차별이나 괴롭힘에 관련하여 불만제기를 하거나 본 규정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접수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V. 교정 및 처벌

- A. 교정 및 처벌 조치는 위원회 위원이 본 규정의 섹션 IV를 위반 했을 때 적절합니다.
- B. 모든 교정 및 처벌 조치는 교육법 섹션 2590-I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품행 또는 언행 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 시행, 또는 위원회 위원의 정직이나 해임 등의 조치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 C. 본 규정 섹션 IV 위반으로 해임된 위원회 위원은 교육법 섹션 2590-c 및 2590-I에 의거하여 향후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VI. 불만 제기 절차

A. 불만 접수

1. 본 규정 섹션 IV 위반 혐의에 대해 ECO에 불만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ECO에 이메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본 규정 말미에 제공된 연락 정보를 사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불만 제기인의 이름이 명시되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악명의 불만 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불만 제기는 반드시 다음 정보를 가능한 한 포함해야 합니다: (i) 본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위원회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

위원(들)의 신원, (ii) 해당되는 경우 날짜 및 장소를 포함한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의 설명, 및 (iii) 위반하였다고 추정되는 본 규정의 섹션 IV 조항.

3. 본 규정의 섹션 IV 위반 혐의에 대한 불만 제기는 반드시 의심되는 사건으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4. 불만 제기 절차에서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 규정 A-663에 따라 제공됩니다.
5. 또한 본 규정의 위반에 대해 SCI에 직접 불만 제기를 접수할 있습니다: <https://nycsci.org/online-complaint-form/> 또는 전화 212-510-1400.
6. 섹션 IV.F., G. 또는 H.의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패, 범죄 활동 또는 이해 상충과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 CEO에 제기한 불만 사항은 교육감 규정 D-130 또는 C-110에 의거하여 SCI 또는 이해 상충 위원회에 의뢰해야 하며, 범죄 활동 혐의가 있는 경우 뉴욕시 경찰국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B. 초기 대응

1. ECO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립니다. ECO는 FACE 공평 위원회에 불만 제기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불만 제기 사안은 FACE에 보관됩니다. 섹션 VI.C.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 제기 및 조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3. ECO가 공평 위원회와 상의하여 위반 혐의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학생 또는 교육청 직원의 안전이나 안녕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거나 뉴욕시 학군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ECO는 교육감에게 불만 제기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 불만 제기의 대상이 되는 위원회 위원을 정직시키거나 해임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불만 제기 사안 조사 절차

1. ECO는 불만 제기 사안이 본 규정의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해당 불만 제기 사안을 검토합니다.
2. ECO가 불만 제기 사안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결정하면 ECO는 관계자 및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불만 제기의 대상은 혐의에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본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 및 목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수 조사를 실시하고 협조할 의무, 대상에게 적법 절차를 제공할 의무 및/또는 신고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불만 제기 내용에 관련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조사 후 ECO는 본 규정 위반 발생 여부 및 추천된 교정 또는 징계 행위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보고서와 권고 사항을 공평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평 위원회는 조사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

결과와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ECO에게 권고를 제시해야 합니다.

5. ECO와 공평 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ECO의 권고가 적용됩니다.

D. 결정

1.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ECO가 불만 제기를 접수하고 역일 기준 90일 이내에 ECO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대리인에게 본 규정 위반 여부와 적절한 교정 또는 징계 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교육감에게 제공합니다.
2.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ECO의 권고를 받고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규정 위반 여부와 적절한 교정 또는 징계 조치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표합니다. 신고인(들) 및 대상자(들)은 서면으로 결정에 대해 통보 받습니다.

E. 완화 기회

1. 교정 또는 징계 조치 이행 전 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원회 위원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대리인으로부터 화해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2. 교육감은 다음의 경우 화해의 기회 없이 위원회 위원은 정직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 a. 범죄 행위,
 - b. 학생 또는 교육청 직원의 안전이나 안녕에 즉각적인 위협, 또는
 - c. 뉴욕시 학군의 이익에 반한다고 교육감이 판단한 경우.

VII. 이의제기(Appeals)

본 규정 및 교육법 2590-1에 따라 발령된 명령에 의거하여 정직 또는 해임된 위원회 위원은 이런 명령의 발령 15일 이내에 교육 커미셔너 규정 파트 113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교육 정책 패널("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반드시 패널 비서에게 panel@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접수해야 하며, 해당 메세지를 비서가 분명하게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의 내용, 서류 송달, 일시적 집행 정지 요청 및 답변 제출을 포함한 이의 제기 절차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교육 커미셔너 규정 파트 113을 참고하십시오.

VIII. 연례 검토

본 규정은 ECO와 공평 위원회에서 매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을 준수하여 갱신합니다.

IX. 면제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수칙 및 불만 제기 절차: 차별 방지 및 괴롭힘
금지 정책**

교육감 또는 대리인이 뉴욕시 학교 학군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예외를 둘 수도 있습니다.

X. 문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Family and Community Empower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405
New York, NY 10007
전화번호: 212-374-4118
이메일: FACE@schools.nyc.gov

Equity Compliance Officer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405
New York, NY 10007
전화번호: 212-374-5101
이메일: D210intake@schools.nyc.gov